



"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Global Top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수신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업체 대표 귀하

(경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귀하

제 목 검사대상기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2016년 7월) 사전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의거, 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허세 대상 사업장일 경우 검사전 관할구청에 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여 주시고 해당 문의는 관할구청(세무담당부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면허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별 첨 1. 검사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신청안내\_신청자용 1부.  
 2. 검사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신청안내\_조종자용 1부.  
 3.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 1부.  
 4. 검사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기 1부. 끝.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대리 김현중 팀장 송재현 05/26

협조자

시행 서울지역본부-559 ( 2016.05.26 ) 접수 ( )  
 우 082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3층 301호(구로동) / www.energy.or.kr  
 전화 02-862-5201,5202 전송 02-862-5203 / kimhj@energy.or.kr / 공개  
 5571



# 검사대상기기 검사 준비 안내 (조종자)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효율관리를 위해 평소 애쓰신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의 계속사용검사 준비 및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원활한 검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계속사용검사 준비사항

### 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검사 입회

: 법률에 따라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반드시 검사시 참여(자격증 원본, 설치 검사증 원본 지참)하여야 하며, 만일 조종자 미참여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검사 처리됨은 물론 재검사 신청(수수료 재납부)을 하셔야 합니다.

### ② 검사종류별 검사 준비

검사종류	검사 사전 준비사항	검사후 조치사항
계속사용 안전검사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기내 모든 내용물 배출</li> <li>○ 내부 청소(스케일, 고오름 제거)</li> <li>○ 모든 맨홀, 검사구, 청소구 등은 개방</li> <li>○ 계측 및 부속장치 정비 분해상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밸브계통</li> <li>- 수위조절계통</li> <li>- 압력조절계통</li> <li>- 급/배수계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후에는 조립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반복적 시운전 실시</li> <li>○ 주요 안전장치 작동상태 점검</li> </ul>
계속사용 안전검사 (사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일러의 안전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준비</li> <li>○ 계측기 및 부속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완료 후에는 보일러를 정상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가동</li> <li>○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사후 점검</li> </ul>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준비</li> <li>○ 계측기 검사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계, 압력계, 수량계 등</li> </ul> </li> <li>○ 배기가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배기계통의 측정구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완료 후에는 보일러를 정상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가동</li> </ul>

## 2 검사일정 사전안내

- 요청검사일 1일전(오후5~6경) 유선 안내 예정

**매우만족**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5.8.31, 2002.11.15,  
2005.8.26, 2008.8.28>

검사지정일 20 년 월 일  
수령인 인

결 재	담당	품질부책임자	감독자
		전결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조 <b>검사대상기기</b> <input type="checkbox"/> 설치장소변경 <b>검사신청서</b>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용 ( <input type="checkbox"/> 개방 <input type="checkbox"/> 사용중 <input type="checkbox"/> 운전성능 ) <input type="checkbox"/> 검사연기	처리기간 <b>7일</b>
---	-------------------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 사업소소재지	(전화)		

신 청 내 용

검사대상 기 기	⑥ 기 기 명		⑦ 제 조 자 명	
	⑧ 설 치 장 소	(전화)		⑨ 검 사 증 번 호
	⑩ 형 식	⑪ 전 열 면 적		⑫ 용 량
	⑬ 최 고 사 용 압 력	⑭ 버 너 종 류		⑮ 사 용 연 료

검사대상 기 기 조 종 자	⑯ 성 명		⑰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⑱ 자 격 종 류		⑲ 자 격 증 번 호	

시공업자	⑳ 상 호 또 는 명 칭		㉑ 등 록 번 호	
	㉒ 소 재 지	(전화)		

㉓ 개조 또는 장소변경 내용			
-----------------	--	--	--

㉔ 검사 요청일(개방.사용중검사)	년 월 일	㉕ 연 기 사 유
운전성능요청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14에 따른 수수료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전자계산서 발급용)

※ ㉑ ~ ㉒란은 설치검사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㉒란의 운전성능 요청일은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팩스 신청시 신청서에 이메일(E-mail)주소 꼭 기록해 주세요. 210mm×297mm

담당자 성명	핸드폰	보존용지 120g/m <sup>2</sup> (재활용품)
이메일주소(E-mail)	※ 전자계산서 받을 이메일 주소 기록요망	
수수료 입금계좌	기업은행 203-037917-01-039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대상기기

수신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검사증번호	기기형식	용량	압력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원)	비고
1994-01-11-14911	강철노연증기	3 t/h	1MPa	안전	2016-07-16	195,400	
1994-01-11-14910	강철노연증기	2 t/h	1MPa	안전	2016-07-16	173,700	
<b>총계</b>	*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공휴일의 검사수수료는 1.5배 적용됩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369,100	